

韓·中 비교 特許法(2)

目次

- I. 總則
- II. 實體規定
- III. 節次規定

〈고딕은 이번號, 명조는 지난 및 다음號〉

〈前號에서 계속〉

II. 實體規定

중국의 專利法은 한국 특허법과 같이 적극적 요건·소극적 요건의 2방면으로 규정되어 있다.

(I) 積極的 要件

발명 및 실용신안에 대해서는 신규성·창조성과 실용성이 필요하다. (제22조)

① 新規性

한국 특허법 6조 및 6조의2의 규정을 합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출원일 이전에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안이 국내의외의 출판물에 발표된 적이 없고, 국내에서 公知·公用되고 있지 않은 것 외에 같은 발명 및 실용신안이 先願명세서에 기

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 필요하다.

② 創造性

발명에 대해서는 출원일 이전의 종래 기술과 비교하여 돌출되는 실질적인 특징과 현저한 진보가 있음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래 기술이란 공지기술을 가리킨다.

또 돌출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란, 그 발명이 반드시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難度가 요구되는 취지이며, 한국법의 실용신안진보성의 차이에 대응한다. 즉, 종래 기술의 형태의 표기나 재료의 간단한 변경은 창조성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實用性

실용성이란 實施可能性·反覆性 및 有益性을 말한다.

(2) 消極的 要件

① 公衆의 이익을 해칠 경우

국가의 법률, 사회의 공중도덕을 위반하고, 또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발명창조에 대해서는 專利權은 부여되지 않는다(제5조). 이것은 한국특허법 제4조3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다.

② 보호대상으로 부터 제외되어 있는 것

한국의 구법과 거의 마찬가지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것은 專利權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a. 과학적 발견
 - b. 지적활동의 규칙·방법
 - c. 진단 및 치료방법
 - d. 식품, 음료 및 조미료
 - e. 의약 및 화학적방법에 의해 취득된 물질
 - f. 동물 및 변종식물
 - g. 원자핵 및 변환의 방법에 의해 제조된 물질
- 단, d~f항 해당의 生産品 제조방법은 전리권에 의해 보호된다(제25조). 또, 위 제d항의 식품, 음료 및 조미료는 인간의 食用物만을 가리킨다. 따라서 동물의 사료도 역시 전리권을 받

을 수 있다. 위 제e항의 화학적방법에 따라 얻어진 물질은 단일 화합물만을 가리킨다.

따라서 복합물도 역시 전리권을 받을 수 있다. 위 제f항의 동·식물 품종은 光·溫度·水土 등 자연조건의 영향을 받아 생물학적 방법으로 번식한 것만을 가리킨다. 따라서 미생물적 방법 및 생산품도 역시 전리권을 받을 수 있다.

2. 新規性喪失의 例外 規定과

專利權의 存續期間

(1) 新規性喪失의 例外 規定

중국의 專利法은 한국 특허법 제7조와 거의 같은 취지의 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즉 6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규성 상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그 발명 창조가 중국정부가 주최하고, 또는 승인한 국제전람회(제)에 처음 전시되었을 경우

② 그것이 소정의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서 처음 발표되었을 경우

③ 그것이 출원인의 뜻에 반하여 공표되었을 경우(제24조).

위의 ①은, 파리조약의 기본적인 원칙에 의거, 고려되었다. 여기서 중국정부가 주최하고 또는 승인한 국제전람회란, 國務院의 각 部委가 주최하고 또는 국무원이 허가하여 개최된 전람회를 포함한다.

물론 국외에서 개최된 전람회도 포함되는데 외국전람회에 전시된 물건은 「종래기술」속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안 적용의 여지는 없다.

위 ②의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란, 국무원의 관계주무관청 또는 전국적인 학술단체가 조직 개최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를 말한다(細則 제30조).

(2) 專利權의 存續期間

출원일로부터 15년이다(제45조①항).

이 기간은 다른 나라의 특허법에 비하여 짧지만, 현대기술발전은 빠르고, 20년이나 경과하면 기술적 우위는 상실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중국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기간이 적당할 것이다.

실용신안과 의장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계산하여 5년인데, 다시 3년간 연장할 수 있는 점이 한국법과 다르다. 모두 합해 8년간이다.

이 기간은 기술이 간단한 실용신안과 의장을 보호하기에 충분하다. 연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초의 5년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그런 취지의 신청서와 수수료로 專利局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연장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專利者에게 잘 생각해 하기 위해서이다. 전리국은 연장여부를 판단할 경우, 특별한 이유나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현행 한국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공고일로부터 15년이고, 또 출원일로부터 20년을 경과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다(제53조).

또 중국에 있어서도 한국법과 같이 외국인인 優先權主張을 하면서 출원했을 경우, 전리권의 존속기간은 중국에서의 출원일로부터 起算된다(제45조③항).

3. 特許權의 消滅事由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전리권은 기간만료전에 소멸된다.

(1) 소정의 年次料 不納時

(2) 전리권자가 서면으로 그 권리의 포기를 표명했을 경우

전리권의 소멸은 전리국에 의해 등록되고 공고된다(제47조). 이하 각호를 해설한다.

(1)호의 年次料를 納付하지 않았을 경우, 권리자는 경제적인 입장에서 고려, 권리유지의 의사를 상실했다고 간주하여 전리국은 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所定」에 대해서는 제칙 87조에 보충하여 결정되었다. 즉, 제1년의 專利料는 專利證書交付時에 納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후의 年次料는 기간만료前 1개월 이내에 예납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年次料의 납부를 소홀히 하는 원인은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전리권자가 경제적으로 곤궁할 경우나, 납입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전리법도 파리조약의 원칙을 적용, 제칙 제88조에 「출원인 또는 전리권자가 소정의 出願維持料 또는 年次料를 납부하지 않고, 또 납부한 출원유지료 또는 年次料 액수가 부족할 때, 전리국은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출원료 또는 年次料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납케 하고, 동시에 출원유지료 또는 年次料의 25%에 해당하는 채납금을 납부시켜야 한다. 기간경과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출원유지료 또는 年次料를 납부해야할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그 출원은 철회 또는 전리권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했다.

(2)호의 전리권자가 서면으로 전리권의 포기를 표명했을 경우, 그 전리권에 대한 實施權者 특히 獨占的實施權者는 커다란 영향을 받으므로, 전리국은 해당조문에 의거한 처분을 행함에 있어 실시권자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있다.

전리권은 전리국의 등록과 공고에 의해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그 소멸도 등록과 공고에 의해 효력을 발생한다.

특히 전리권 포기의 경우, 등록하지 않으면 포기한 것이라 간주되지 않는다. 또 한국 특허법에 있서는 특허의 소멸에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 ① 존속기간의 만료(特 53조1항)
- ② 상속인이 없을 경우(特 71조)
- ③ 특허료 不納(特 77條3項)
- ④ 특허무효심결·확정의 경우(特 70조1항) 및 특허의 취소·포기(特 70條3항)등의 경우

4. 特許權의 無效

권리가 부여된 후에도, 특허요건미비라 판명되었을 경우, 누구라도 전리 復審委員會에 그 전리권을 무효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48조).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에 한정되지 않는 부분이 한국법과 다르다.

무효이유는 「그 附與가 전리법의 규정을 총

족시키고 있지않다」에 한정되며, 이 점에 대하여 제칙 66조가 좀 더 상세하게 보충 규정으로 정하여져 있다. 무효이유와 이익이유는 거의 같다.

그리고 외국인이 출원할 때에 권리능력을 갖고 있었으나, 그 후 권리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도 무효이유에 해당한다.

중국에 있어서도 권리무효선고 청구는 전리국에 속하는 專利復審委員會에 대하여 行한다. 무효이유는 大體的으로 技術문제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復審 위원회는 각 분야의 기술상태를 잘 아는 심판관으로 구성하는 것이 그 판단을 하는 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전리부심위원회의 무효선고 혹은 전리권유지의 선고는 청구인과 전리권자에게 통지됨과 동시에 등록 및 공고된다.

부심위원회의 결정에 不服할 때에는 통지서 受理日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판소에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의 심결취소소송은 審決謄本送達日로부터 30日 이내에 제기하게 되어있음과 비교해 그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단, 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계된 동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어서, 재판소에 불복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제49조).

5. 不實施 境遇의 裁定實施權

여기서 중국 전리법에 규정된 강제실시권의 대상은 발명과 실용신안에 한정되며, 의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발명과 실용신안은 의장과 달리 동등한 代替技術을 발견하는 일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 실시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의장에 대해서는 공업생산품의 형상과 도안·색채만으로, 다른 의장으로 대체할 수 있고, 그 의장의 실시를 강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강제실시권의 裁定手續은 그 처리가 빠르고, 비용이 적다는 등의 잇점을 고려, 전리법은 재판소가 아니라 행정기관인 전리국의 관할로 하였다(제52조). 強制實施權의 裁定 또는 그 댓가 액수에 불복하는 전리권자는 통지 受理日부터

3개월 이내에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58조).

(1) 專利權者의 實施義務

전리권자는 스스로 중국국내에서 그 전리제품을 제조하고, 그 전리방법을 사용하든가, 타인에게 그 실시를 허락할 의무를 가진다(제51조). 이 제조 혹은 사용이 중국국내에서 행해지지 않으면 안되며, 외국에서 제조된 생산품을 중국에 수입해서도 실시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 그것만으로는 중국경제 발전에 공헌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중국의 대외무역은 국가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외국의 전리권자는 임의로 그 생산품을 수입할 수 없다.

외국인 전리권자는 중국정부의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개인기업 혹은 합병기업을 설립하여 자신의 전리를 실시할 수 있다. 만약 자신이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면, 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중국기업, 합병기업 혹은 외자기업에 실시케 할 수 있다. 단, 계약발효 후 3개월 이내에 전리국에 신고하여 등록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細則第13條).

또 필요하다면 그 물건의 제조 혹은 그 방법 사용의 노우하우를 함께 실시권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2) 強制實施權의 裁定要件

발명과 실용신안 전리권자는 전리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만 3년간, 정당한 이유없이 전술한 제51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리권이 실시조건을 구비한 단위신청에 의거, 이 전리의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제52조).

① 상기한 3년의 유예기간을 파리조약의 규정과 일치하며, 그 이유는 실시를 위해 준비시간이 걸리는 것과 이제 특허권리를 막 취득한 기술을 바로 실시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이다.

② 권리자는 발명과 실용신안을 실시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 중국 전리법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실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리생산품의 수입가능이

라는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기술적 이유에서 이것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로서 인정받는다. 예를 들면 생산품의 제조중 어떤 기술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또는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데 시간을 요하는 경우 등이다.

③ 실시조건을 구비한 단위가 청구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강제실시권의 청구주체가 單位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더우기 이들 단위에는 全民所有制單位, 集團所有制單位와 중국국내의 합병기업 및 외자기업도 포함된다. 또 청구자는 실시조건을 갖는 취지의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다른 한편, 전리권자는 실시조건을 부인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청구자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전리권자와 실시허락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제154조).

(3) 強制實施權의 性質

강제실시권에 독점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는 국제적으로 보아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중국 전리법 제56조 「강제실시권을 취득한 단위, 혹은 개인은 독점적인 실시권을 받을 수 없고, 또한 타인에게 실시를 허락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는 실시권이 부여된 후에도 전리권자는 자신의 전리를 실시할 수 있고, 또 타인에게 이 전리의 실시를 다시 허락할 수 있다.

전리국은 하나의 강제실시권을 부여한 후라도 실시의 능력을 갖춘 다른 단위의 신청이 있으면 다시 한번 강제실시권의 허락을 부여할 수 있다.

(4) 強制實施權의 등록·公告·使用權

강제실시권을 부여한 전리국의 결정은 등록 및 공고에 의해 효력을 발생한다(제55조). 보통 상기한 결정中에 있어서는 대체로 다음의 문제점이 규정되었다.

① 強制許諾의 범위(a. 강제허락의 기간 b. 실시행위의 종류)

② 사용료의 가격과 조건

강제실시권을 취득한 단위 또는 개인은 전리권자에게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금액은 당사자 쌍방에 의해 결정된다. 쌍방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리국이 裁定을 한다(제57조).

여기에서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불한다」라고 규정한 목적은 사용비의 금액이 너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고, 보통 중국에서는 사용료의 금액은 전리권자와 강제실시의 청구인이 협의할 때, 一般許可契約의 사용료를 참고로 하여 결정된다.

6. 利用發明

이용발명의 경우, 강제실시허락 「하나의 전리권을 취득한 발명 혹은 실용신안이 먼저 전리권을 취득한 발명 혹은 실용신안보다 기술적 선진성이 있고, 나중의 발명 혹은 실용신안의 실시가 먼저의 발명 혹은 실용신안의 실시에 의존할 경우, 전리국은 나중의 전리권자의 신청에 의거, 앞의 발명 혹은 실용신안을 실시하기 위한 강제허락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前項의 규정에 의해 강제허락이 부여되었을 경우 앞의 전리권자의 신청에 의거, 전리국은 나중 발명 혹은 실용신안실시를 위한 강제허락을 부여할 수가 있다(제53조).

본 조문의 목적은 먼저의 전리권자가 기술적 선진성이 있는 나중의 전리권실시를 방해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여기에서 강제실시권 설정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2개의 전리는 상호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고,

(2) 나중의 전리는 먼저의 전리보다 기술적 선진성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나중의 전리권자는 전리국에 대하여, 자신의 기술적 선진의 증명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

본 조문의 목적은 기술적 선진의 나중 전리의 실시를 장려함에 있기 때문에 먼저 전리권자의 실시 有無나 기간에 관계없이 나중 전리권자에 대해 강제허락을 부여할 수 있다.

前記한 의존관계는 발명상호간 발명과 실용신안 사이, 혹은 실용신안 상호간의 어느 한가지에 성립되면 된다. 또 본조의 강제허락을 신청할 수 있는 者는 단체만이 아닌 2가지 상호의존의 전리권자에는 개인도 있고 때문에 개인신청도 할 수 있다. 더우기 전리법의 해석에 따라 신청에는 선후의 전리권자만이 아닌 각각의 실시권자도 청구할 수 있다.

본 조문 ②항의 크로스라이센스는 나중의 전리권자가 먼저 전리의 강제실시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먼저 전리권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것은 쌍방의 이익보호의 적당한 바란스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7. 專利權의 保護

(1) 權利侵害의 정의와 구제수단

① 권리침해의 정의

無許諾의 실시행위에 대해서 전리권자 혹은 이해관계자는 專利管理機關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고, 또 직접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60조).

여기서는 무허락의 실시행위가 권리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즉, 전리권자의 허락없이 생산·영업의 목적으로 전리생산품을 製造·使用·販賣 또는 전리방법의 사용은 권리침해에 해당한다. 한국 특허법과 같은 침해간주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特64條). 단, 전술한 국가지정실시(제14조) 및 불실시 또는 利用發明을 이유로 하는 강제실시권(제52조, 제53조)이 있으면 권리침해가 되지 않는다.

중국전리법에서는 권리침해에 대한 주로 民事的救濟로서는, 침해행위의 정지 및 損害賠償請求權이 있다. 전리국 요원 및 국가공무원이 위법행위를 하고, 또 권리침해의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만, 형사적 제제가 부과된다(제66조).

② 민사적 구제수단

분쟁처리기관은 진술한 바와 같이 전리판리기관 또는 재판소이다. 전리판리기관에 처리를 청

구하는 것은 재판소에 出訴하기 위한 전제요건은 아니다. 전리권자 혹은 이해관계자는 처음부터 직접 재판소에 출소할 수도 있다.

재판소에의 出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원칙적으로 침해행위지의 재판소가 관할권을 갖는다. 이 규정에 의하면 곤란할 경우 被告의 戶籍所在地의 재판소가 관할권을 갖는다.

또 피고가 단체일 경우에는 이 단체의 소재지 재판소가 관할권을 갖는다. 그러나 재판소만이 아닌 전리관리기관이 전리분쟁사건을 처리할 수도 있다.

이런 전리관리기관이란, 國務院의 관계주무관청과 各省, 自治區, 직할시, 開放도시 및 經濟特區의 人民政府가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세칙 제76조).

전리관리기관은 행정기관이지만, 행정수속은 사법수속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이 기관에 의해 특허권리침해의 분쟁을 처리하는 편이 시간도 절약된다.

또 전리권자 또는 침해자가 전리관리기관의 처리에 불복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재판소에 출소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에 당사자가 출소하지 않고, 또한 전리관리기관의 결정도 실행되지 않을 때, 관리기관을 재판소에 강제집행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전리관리기관은 전리관리국과 전리관리처로 나뉘어진다. 보통 대도시에서는 專利出願의 건수가 많고, 전리분쟁도 많기 때문에 전리관리국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上海專利管理局를 예로 들면, 當該관리국은 국가규정의 정원 15명이다. 그 대부분은 대학의 理科 혹은 法科를 졸업하고, 공업소유권법 지식연수에 참가했던 사람들이다. 주요 임무는,

a. 소재지의 전리활동계획의 작성 및 소재지의 전리활동에 대한 지도 工作

b. 전리분쟁의 처리, 조정

c. 전리법의 선전과 보급

지금 대만과 티벳을 제외하고, 상기한 전리관리기관은 전국에서 100개 정도에 달하고 있다. 또 상기한 전리관리기관은 전리출원을 수리하지

않는다. 다만, 중국 전리국상해분국과 약간의 태변처가 이것을 수리할 뿐이다.

(2) 제조방법의 증명

전리방법의 침해사건에 있어서는 전리방법에 의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단위 혹은 개인은, 자신의 제조방법의 증명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제60조②항).

전리방법 침해의 경우, 전리권자가 타인이 이용했던 방법을 탐지하기는 곤란하므로, 피고에게 그 입증 책임을 부과하였다(한국법과 같이 그 물건이 出願前 非公知의 것일 경우에 침해를 추정한다는 형식을 직접 채용하고 있지는 않다(第104條)).

권리침해사건에 있어 原告適格 또는 청구인격을 갖는 者는 권리침해 이외에 이해관계인이 있다.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허락계약에 의한 실시권자 및 강제실시허락을 부여받은 者를 말한다. 또 허락계약의 실시권자가 직접 권리침해의 처리를 청구할 권리를 가졌는지 어떤지는 허락계약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3) 侵害訴訟의 時效期間

전리권자 혹은 이해관계인이 침해행위를 알고 또는 알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出訴權은 소멸된다(제61조).

침해행위를 「알았다」는 것은 전리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관적인 상태를 의미하며,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전리권자 혹은 이해관계인의 객관적인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면, 원고가 기업일 경우에 경쟁상대의 제품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권리침해행위를 하면, 전리권자는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된다.

또 상기한 시효기간은 손해배상청구권 및 금지청구권에 적용된다.

전리권자가 전리관리기관에 처리를 청구할 경우에는 권리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송時效가 중단된다.

8. 權利的 侵害

(1) 侵害訴訟提起의 수속

전리권자 혹은 그 이해관계인이 재판소에 침해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우선 재판소에 起訴狀을 제출해야 한다.

기소장이 재판소의 수리요건을 충족시켰을 경우, 재판소는 7개월 이내에 서류를 작성한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재판소는 기소인에게 그 침해소송을 수리하지 않겠다는 요지의 통지를 한다.

(2) 權利侵害와 專利權無效의 關係

專利權無效의 주장은 피고의 최대 방어방법이지만, 한국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는 專利權無效宣言을 행정기관인 復審委員會에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술하면, 이것은 침해소송에 대해서 제기된 소송이라 인정할 수 있다. 중국의 최고재판소 《專利審判工作에 관한 규정》중에서 「전리법 침해소송의 과정에서 피고가 전리권무효의 反訴를 제기했을 경우, 침해소송을 수리한 재판소는 전리법 제48조(무효선고의 청구) 및 제49조(무효결정의 不服)의 규정에 의해 처리됨을 피고에게 通知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기간, 침해소송을 수리한 재판소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제118조 ④항)에 의해 소송을 중단하고, 전리권의 유효 또는 무효의 문제가 해결된 후, 전리권침해소송을 재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보통의 민사소송 중에서 反訴와 本訴는 통상 併合하여 審理를 할 수 있고, 反訴도 本訴를 수리한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전리법에 의해 한편에서는 권리침해소송은 省, 自治區, 直轄市 人民政府所在地 중급급재판소 및 경제특구의 재판소(중국의 민사소송은 縱審終審制를 채용하고 있고, 상기한 중급재판소를 제1심의 재판소로서, 상기한 고급재판소를 제2심이라 한다)에 제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전리권무효 또는 부분 무효 선언을 청구할 때에는 전리 復審委員會에 청구할 수 있다. 이 2개의 조건에 대하여 併合하여 심리할 수 없다. (계속)

新 刊 案 內

新 特 許 法

저자: 辨理士 南 啓 榮 외 3人
규격: 국판 512면
가격: 8,300원

工 業 所 有 權 法 要 解

저자: 辨理士 金 學 濟 · 金 延 洙 공역
규격: 국판 734면
가격: 9,000원

特 許 法 精 解

저자: 兪 東 浩 (特許廳 事務官)
규격: 신국판 600면
가격: 12,000원

商 標 法

저자: 辨理士 李 秀 雄
규격: 국판 552면
가격: 9,500원

國 際 工 業 所 有 權 法

저자: 辨理士 金 永 吉
규격: 4·6배판, 1,664면
가격: 74,000원

改 正 版

商 標 法 解 說

저자: 金 寬 衡 (本會 研修部長)
규격: 국판 480면
가격: 9,500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 발명장려관 내 자료판매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551-5571~2